

독자제재 시행 성과 및 기대 효과

2016.12.2.(금)

1 총 평

- 금년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**2.10 개성공단 전면중단 및 3.8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,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및 주요국 독자제재 강화를 선도**
 - 우리를 포함한 미·일·EU·호주 등 유사 입장국들은 지난 9개월여간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는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 체제를 구축, 제재의 틈새(loophole)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조
 - 한·미·일·EU·호주의 대북제재 범위는 무역·금융·해상운송·항공 등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, 이들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(세계 GDP의 55%, 세계교역량의 약 35%)과 이들 국가의 다국적 기업들이 지닌 세계적 영향력이 상당한바, 여타국이 **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자제시키는 효과(chilling effect) 발생**
- 이러한 안보리 제재, 주요국 독자제재, 글로벌 대북압박 등 전방위적 조치의 결과, **3-11월중 북한의 외화수입 손실 규모는 2억불 수준인 것으로 추정**
 - 외화수입 손실은 개성공단 폐쇄가 가장 크며, 대중수출·무기판매·해운·인력송출 등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전 분야에서 발생 중으로 파악

2 독자제재 시행 주요 성과

【금융제재 대상 확대】

- 3.8 우리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 지정 이후 미국·EU·호주·UN도 우리 제재대상 가운데 일부를 제재대상에 추가한바,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**제재 동참을 선도**하면서 인적제재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효과 발생

- 국제사회 제재대상에 중복 포함되면서 북한과 문제 있는 금융거래를 기피하도록 유도, 제재대상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
 - ※ 미국, 3.8 독자제재 대상으로 기포함된 일심국제은행, 대외기술무역센터를 제재대상으로 지정('16.3.16)
 - ※ EU, 홍승무, 조춘룡, 김춘섭, 김낙겸, 홍영철, 이학철, 윤창혁을 제재대상으로 지정('16.5.20)
 - ※ 호주, 김석철, 이정철, 황수만을 제재대상으로 지정('16.5.12)
 - ※ UN, 결의 2321호에 따라 김세건, 김석철, 장창하, 조춘룡, 손문산, 일심국제은행, 조선대성은행, 대외기술무역센터 등을 결의 2321호상 제재대상으로 지정('16.11.30)

【해운통제 강화】

- 우리 정부는 북한에 기항한지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선박 및 북한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를 철저히 시행
 - 인접국인 일본도 우리와 유사하게 북한기항 외국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
 - EU의 경우에는 북한소유·운영 또는 북한선원 탑승 선박(북한 편의치적 선박 포함)의 EU 회원국내 입항을 전면 금지
- 아울러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**아프리카 및 동남아 등지에서 96척의 북한 편의치적 선박의 등록 취소**
- 한국, 일본, EU 등이 취해온 대북 해운통제 조치 결과, **북한의 해운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으며, 북한의 의심물자 수송 차단에도 기여**
 - 2015년 한해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이었던 반면, **3.8 독자제재 시행 이후 '16.11월 기준 제재대상 선박의 국내입항 시도 현황은 전무**
 - 일례로 A국의 한 해상 운송회사 유조선의 경우, 우리 정부의 3.8 독자제재 발표 이전 북한과 체결한 농업용 디젤유 운송 계약으로 인해 북한 항구에 기항한 관계로 국내 입항이 불가능해진바, 동 회사는 이후 **북한과의 거래 중단 또는 여타 지역으로의 거래선 대체 등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짐.**

【수출입 통제 강화】

- 3.8 조치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산 물품의 제3국을 우회한 위장반입 차단 활동을 강화해 온바, **북한산 위장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**
 - 2010년 5.24조치 이후 2016.8월까지 총 91건 적발 및 16건 처벌
 - 이중 적발 건수는 '15년 23건에 33억원 상당이었으며, 올해는 1~8월 까지 16건에 3억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크게 감소
 - ※ '16년 실적 : △합동점검회의 3회 △시장점검 8회 △해외동향 파악 2회 △업무매뉴얼 작성·배포(9월) 등
- 또한, 정부는 6.21 북한의 핵·미사일 감시대상 품목(watch-list)을 발표, 핵·미사일 관련 다자 수출통제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(NSG) 총회(6.20-24, 서울, **48개 회원국**)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(MITCR) 총회(10.17-21, 부산, **35개 회원국**)에서 동 목록을 회람
 - 각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및 대북 수출통제 시스템 강화에 기여
 - ※ 핵 관련 89개, 미사일 관련 41개 총 130개 품목 작성

【北 해외 영리시설 이용 자제】

- 정부는 ▲우리 국민·현지 동포, 관광객(여행사)을 대상으로 북한의 영리활동 수익이 핵개발에 활용될 우려 등을 설명하고 출입 자제를 주기적으로 계도 ▲북한식당 소재지국을 대상으로 불법·편법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실시
 - ※ 해외 북한 운영 식당은 12개국 100여개
 - 북한식당 소재지국 : 중국, 러시아, 몽골, 캄보디아, 베트남, 아랍에미리트, 태국, 네팔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인도네시아
-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 호응도도 높은 편이며,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 및 우리 공관, 동포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해외 북한식당 이용객 감소 추세
 - ※ 최근 해외 북한식당 주요 동향
 - (중국) 칭다오 소재 북한식당 고용 북한인력 취업비자 발급 거부 및 전원 추방, 불법체류 벌금 부과 등 / 북한 종업원 노동비자 발급 거부로 광저우 소재 북한식당 폐쇄(7월) / 우한 소재 북한식당 폐쇄(5월)
 - (캄보디아) 3월 이후 북한식당 6개 중 2곳 폐쇄(3월, 7월)
 - (베트남) 북한식당 4개 중 1곳 폐쇄(4월), 나머지 3개 식당은 영업중이나 실적 부진
 - (인도네시아, 몽골, 네팔, 말레이시아 등) 북한식당 실적감소, 영업부진

3 신규 독자제재 조치 기대효과

【금융제재 대상 확대】

- 금번 조치로 우리 독자적 제재대상은 34개·43명 → 69개·79명으로 대폭 확대
 - 이들 가운데 단체 19개 및 개인 19명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지정하는바, 3.8 조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도적 제재를 통해 여타국 및 유엔의 제재 동참을 촉진하는 효과 기대
 - 특히 北 제1 외화수입원인 석탄 수출 및 제3 외화수입원인 해외 노동자 송출을 주도하는 북한 단체·개인을 우리 금융제재 대상에 최초로 포함, 우리 독자제재 조치의 새로운 지평 개척
 - 기존 WMD 확산 저지 위주 → 北 외화수입원 전반에 대한 실질적 차단 강화
 - 금명간 미국이 발표할 독자제재 리스트에도 北 석탄 수출 및 해외 노동자 송출 관여 북한 단체가 최초로 포함될 예정인바, 이는 한미 양국간 긴밀한 정보공유 및 사전조율의 성과

【수출입 통제 강화】

-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임가공 의류 수출 차단 강화 차원에서, 정부는 의류 수입 관련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북한 임가공 제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계도해 나갈 예정
 - 북한의 의류 임가공 수출은 '15년 수출액(8억불)이 전년동기 대비 7.9% 증가하였고, 수출비중도 무연탄(10.5억불, 42.3%)에 이어 높은 비중(32.2%)을 차지
 - ※ 북한 임가공 수출액·비중 : '13년(5.9억불, 20.2%) → '14년(7.4억불, 26.1%) → '15년(8억불, 32.2%)

- 한편, 정부는 잠수함 분야 감시대상품목(watch-list)을 작성함으로써,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지 않지만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목록화하여,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통제를 지원할 예정
 -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(SLBM) 체계의 핵심인바, 잠수함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수출통제를 견인해나감으로써 북한의 SLBM 능력 증강 저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【해운통제 강화】

- 북한 해운활동 차단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180일 조건을 2배 확대하여,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바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 예정
 -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는바,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더욱 기피할 것으로 기대

【출입국 제한】

- 우리 독자제재 대상인 제3국인*에 대해 국내 입국을 금지함으로써, 제재 대상자 지정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
 - 출입국관리법 제11조(입국의 금지 등)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국내 입국 금지 가능
 - ※ 우리 독자제재 대상 제3국인 : 대만(4), 싱가포르(1), 중국(4) 총 9명
- 아울러,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국내 대학, 정부 출연 연구소, 공공기관에서 종사 중인 핵과 미사일 관련 분야 전문가가 방북을 통해 우리 국익에 위해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내 재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
 - 인접국 일본은 현재 재일외국인 중 북한을 방문한 핵·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를 실시중인바, 한·일 양국의 유사한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·미사일 기술 고도화 차단에 기여 예정. 끝.